제344회 정례회 2015.12.01.(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교 육 위 원 회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12.01.(화) 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 광 희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5년 11월 04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11월 05일

라. 상정일자

- 2015년 11월 13일,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제1차 교육위원회
 - 심의보류
- 2015년 11월 25일,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제2차 교육위원회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광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학교 및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2)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친환경 운동장 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5)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운동장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6)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7)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○ 본 조례제정안은 「교육기본법」제27조에 따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안 제2조 정의에서 "친환경 운동장" 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·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운동장으로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책무로써 충청북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'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'등 6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・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조사결과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 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 - 2. "친환경 운동장"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·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)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
 - 2.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
 - 3.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
 - 4.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
 - 5.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
 - 6.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 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실시할 수 있다.

- 제6조(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 등)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북도,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8조(포상)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, 단체, 개인 등을 선정하여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

- □ 교육기본법[법률 제13003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 - 제22조의2(학교체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□ 유아교육법[법률 제13226호, 2015.3.27., 일부개정]
 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2. "유치원"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- □ 초·중등교육법[법률 제12933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
 -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 - 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 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 - 3. 고등학교・고등기술학교
 - 4. 특수학교
 - 5. 각종학교
- □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[조례 제3624호, 2013.12.27. 타법개정]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"행사"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게 수여한다.

- 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.
- 제8조(표창권자)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및 교육 장이 행한다.
- 제9조(표창 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,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,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.
-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(우승기, 우승컵, 상패, 공로패, 메달, 기념품, 포상금, 장학금, 연구비, 해외연수 특전 등)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